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4. 24(수) 10:00

## 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508호

나. 제 출 자 : 정재동 의원, 장규권 의원, 정순기 의원, 엄셋별 의원,  
고성미 의원

다. 제출일자 : 2024. 4. 15.

라. 회부일자 : 2024. 4. 15.

##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결과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정비하고자 함.

나.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았을 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900,000원에서 1,200,000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개정(안 제2조)

나.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징계의결을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제한 사항 신설 및 조문 정비(안 제7조의2)



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

<신 설>

<신 설>

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하  
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10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 48,000천원(400,000원×12개월×10명) 소요

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제2조 제2항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상향분이 2024년 1월부터 소급 지급될 수 있도록 부칙으로 규정

##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 3. 6.일자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결과를 반영하고, 지방의회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징계의결을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 내용> ☞ 붙임 1 참조

- 의정활동비 : 월 150만원
  -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 월 120만원
  - 보조활동비 : 30만원

- 의정활동비 인상 내역(1개월)

(단위 : 만원)

구 분	현 행	개정 후	인상분 (1명)	인상분 총계 (10명)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	120	30	300
보조활동비	20	30	10	100
계	110	150	40	400

※ 인상된 의정활동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추경을 통해 12개월의 인상분인 48,000,000원 예산 확보 필요

- 400만원 x 12개월 = 4,800만원

※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회 의정활동비 관련자료 ☞ 붙임 2 참조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의정활동비 금액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호에서는 의정활동비의 구체적인 금액의 책정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2024년 1월부터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부칙을 통해 규정한 것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제2조제2항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의회의 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함.

- 현재 전국 지방의회에서 해당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에 있으며,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의원의 의정비는 상위법에서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한 보전 비용 및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원이 징계처분 등으로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기간에 지급받는 비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됨.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붙임 1. 참고자료(2023년~2026년 의정비 결정 통보서) 1부
2.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회의 의정활동비 관련자료 1부
3. 관련 법령 1부.



## 참고자료

### 2024년 ~ 2026년 의정활동비 결정 통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관련하여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심의·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정비 결정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의결일자 : 2024. 3. 6.(수)

나. 의결사항

○ 의정활동비

계	의정자료 수집 · 연구비	보조활동비	비고
월 150만원	월 120만원	30만원	

2024. 3. 6.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김 진영 (서명)

금천구청장·금천구의회의장 귀하

【붙임 2】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회 의정활동비 관련자료(2024. 4. 15기준)**

(단위 : 천원)

총액 순위	의회명	월정수당 (월, 1인) (A)	개정전 의정활동비(월, 1인) (B)	2024년 개정전 의정비 총액 (A+B)	개정후 의정활동비(월, 1인) (C)	주민의견 수렴방법	2024년 개정후 의정비 총액 (A+C)	조례안 개정
	서울시	4,117	1,500	5,617	2,000	공청회	6,117	2024-02-29
1	강남구	3,379	1,100	4,479	1,500	공청회	4,879	4월 임시회(예정)
2	중 구	3,280	1,100	4,380	1,500	여론조사	4,780	4월 임시회(예정)
3	서초구	3,170	1,100	4,270	1,500	공청회	4,670	4월 임시회(예정)
4	송파구	3,108	1,100	4,208	1,500	공청회	4,608	2024-03-20
5	노원구	3,059	1,100	4,159	1,500	공청회	4,559	2024-03-18
6	관악구	2,930	1,100	4,030	1,500	공청회	4,430	2024-03-26
7	양천구	2,912	1,100	4,012	1,500	공청회	4,412	2024-04-11
8	광진구	2,872	1,100	3,972	1,500	여론조사	4,372	4월 임시회(예정)
9	강동구	2,868	1,100	3,968	1,500	공청회	4,368	4월 임시회(예정)
10	동대문구	2,854	1,100	3,954	1,500	공청회	4,354	2024-03-28
11	영등포구	2,845	1,100	3,945	1,500	공청회	4,345	2024-03-14
12	성북구	2,833	1,100	3,933	1,500	공청회	4,333	2024-04-11
13	중랑구	2,825	1,100	3,925	1,500	공청회	4,325	2024-03-28
14	성동구	2,822	1,100	3,922	1,500	공청회	4,322	4월 임시회(예정)
15	서대문구	2,820	1,100	3,920	1,500	공청회	4,320	2024-03-21
16	강북구	2,816	1,100	3,916	1,500	공청회	4,316	4월 임시회(예정)
17	종로구	2,809	1,100	3,909	1,500	공청회	4,309	2024-04-05
18	강서구	2,795	1,100	3,895	1,500	공청회	4,295	2024-03-15
19	은평구	2,771	1,100	3,871	1,500	공청회	4,271	2024-03-21
20	용산구	2,752	1,100	3,852	1,500	공청회	4,252	2024-03-15
21	구로구	2,736	1,100	3,836	1,500	공청회	4,236	4월 임시회(예정)
22	동작구	2,710	1,100	3,810	1,500	공청회	4,210	2024-03-26
23	마포구	2,700	1,100	3,800	1,500	공청회	4,200	2024-04-12
24	도봉구	2,688	1,100	3,788	1,500	공청회	4,188	2024-04-04
25	금천구	2,646	1,100	3,746	1,500	공청회	4,146	4월 임시회(예정)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 현행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93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6., 2007.12.28., 2014.12.30., 2022.1.12., 2022.12.30.>

**제2조(의정활동비)**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4.12.30.>

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기개시 또는 퇴직 등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기간이 1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31., 2004.1.20., 2014.12.30.>, <단서 신설 2017.10.13.>

③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26., 2014.12.30., 2022.1.12.>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28., 2008.12.24., 2009.1.15., 2014.12.30., 2019.1.16.>

③ 월정수당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26., 2014.12.30., 2022.1.12.>

**제4조삭제** <2000.1.31.>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 회의참석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단체 이외의 사설기관에서의 연수, 연찬회 참석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제6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0.01.31., 2014.12.30.>

②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01.31., 2014.12.30.>

**제7조(여비지급의 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10.13.]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등 지급은 지방공무원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4.12.30., 2022.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6.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01.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4. 1. 1 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0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5.10.14>

부칙(2005.10.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제444호(2005. 9. 9) 시행당시 2005년 8월 5일부터 소급 적용한 제3조제2항의 회기수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부칙(2007.12.28)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2.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38호, 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08호, 2019.1.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34호, 2022.1.12.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연 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2023년	연 3,122만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